

항목: 학생

발행: 2012/03/22

번호: **A-665**

제목: 교복 정책

페이지: 1 의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서는 교육청의 자발적인 교복 정책을 시행하며 교육감 규정 A-665: 2008년 9월 11일 발행된 의무 교복 정책을 대체합니다.

변경 사항:

- 본 규정서에 대한 문의를 담당하는 사무실의 명칭이 가정참여 대변실(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OFEA) 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참여 담당실(Division of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FACE)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요

본 규정은 모든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교복 정책을 실행하며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자발적인 교복 정책은 학교들이 더욱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증진하고; 학교 통합과 자부심을 배양하며; 학생 수행도를 향상하고; 자긍심을 배양하며; 레벨 경쟁을 배제하고; 복장을 간소화하며 학부모의 지출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에게 "학습" 장소에 적절한 복장과 단정함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품행과 자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 교복 착용의 정의

A. 교복은:

1. 예를 들어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하얀색 단추로 잠그는 셔츠 또는 터틀넥 셔츠와 검정색 또는 청색 바지 또는 치마와 같이 통일된 색상과 스타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2. 학교 문양이 부착된 점퍼, 바지, 격자무늬 의상, 셔츠, 스웨터와 같은 제작된 공식적이며 전통적인 교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복은 일반적으로 한 업체에서 구매하거나 인근 상점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또는
3. 예를 들어 통일된 색상 (예. 노란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에 학교 문양을 부착하여 만들어진 스웨터나 자켓을 착용하여 이런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교복은 교육에 방해가 되는 보건 또는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의복들로 구성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C.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착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교에서는 반드시 여학생들에게 바지를 착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D. 학교는 튼튼하고, 보관이 용이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교복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II. 실행

A. 교복 정책은 개별 학교들이 교복 요건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B. 교복 요건을 실시하는 각 학교는 반드시 다음에 안내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III. 교복 정책 채용

A. 학부모와 상의¹

1. 교복 요건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학교 리더십 팀은 반드시 학교의 학부모회(PA) 또는 학부모 교사회(PTA)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각 학교 리더십 팀은 반드시 학부모, 교사, 학생 및 행정 직원들과 최소 1 차례의 포럼을 PA/PTA와 함께 주관하여야 합니다. 초소 10일 전에 적절한 서면 통지가 반드시 회의 전에 이루어져야 하면 이 회의는 반드시 학부모, 교사, 학생 및 행정 직원들이 참석하기에 적절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위에 설명한 포럼에 더해 학교 리더십 팀은 기타 협의 방법을 통해 (예, 학부모 설문, 학교 뉴스레터 등)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¹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또는 학생과 부모 관계 또는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관, 혹은 그 밖에 학부모가 부모역할을 대신 하도록 지명한 사람(loco parentis)을 의미 합니다.

4. 상의를 하는 목적은 학부모, 직원 및 학생들의 다음에 대한 관점을 논의 및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a. 학교에서 교복 요건을 채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 b. 학교에서 교복 요건을 채용한다면 어떤 교복을 착용할 것인지; 및
 - c. 학교에서 교복 요건을 채용한다면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한 학생에게 대여할 교복을 준비할 것인지의 여부.
 5. 이런 논의를 통해 수령한 의견을 기초로, PA/PTA에서는 학교 리더십 팀에 추천하도록 합니다.
- B. 학교 리더십 팀**
1. 학교 리더십 팀에서 교복 요건을 채용하도록 투표하였다면, 학교 리더십 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a. 어떤 교복 (섹션 I 참조)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및
 - b.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한 학생에게 대여할 교복을 준비할 것인지의 여부.
 2. 학교 리더십 팀에서 교복 정책을 채용하기로 투표한 경우 이 교복 정책은 학교 리더십 팀에서 교복 정책을 폐지할 때까지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3. 학교 리더십 팀이 구성되기 전에, 개별 학교의 계획 팀에서 대신 관련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 계획 팀이 없다면, 학교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학부모, 교사 및 행정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대신 관련 내용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IV. 교복 구매

- A. PA/PTA는 절대로 교복 판매 업체로부터 PA/PTA를 대신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선물을 받거나 받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PA/PTA가 가격을 흥정할 때 업체로부터 학교 교복을 기증받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B. 개별 PA/PTA 임원진은 절대로 다른 학부모에게 추천한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선물로 교복, 현금이나 기타 물품을 받거나 받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양의 의복을 구매한 학부모들에게 업체에서 보너스로 무료로 교복이나 교복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받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C. 학교나 PA/PTA에서는 절대로 교복 판매를 기금 모금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D. 교직원들은 교복 구매를 위해 학부모로부터 비용을 모으지 않도록 합니다.
- E. 학교 리더십 팀과 협의하여, PA/PTA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신하여 교복 구매를 대행하기 위해 비용을 모을 수 있습니다.
- F. 교직원과 PA/PTA는 업체에게 학부모/학생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V.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부모 권리

학교에서 교복 요건을 채택하였다면, 학생의 학부모는 정책으로부터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학생의 학부모는 반드시:

- A. 예외 요청서(Exemption Form: 첨부 번호 1)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학군 가정 대변인이나 보로 디렉터에게 사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 B. 교복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혜택을 충분히 설명해줄 학교 담당 직원과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 C. 교육에 방해가 되는 보건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을 의복과 같은 교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복장을 할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VI. 공고

- A. 학교 리더십 팀에서 교복 요건을 채용하도록 투표하였다면, 학교장/담당자는 반드시 학부모,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교복 정책에 대한 공지가 전달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공지는 매년 제공되어야 합니다.
- B. 공지에는 반드시:
1. 교복에 대한 설명 및/또는 사진 그리고 교복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 기대치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각 물품별 비용 범위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학부모들이 반드시 직접 교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특정 물품이 지정되었다면 관련 물품의 판매처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본인의 원하는 어떤 업체/상점에서도 교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의복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4. 학부모들에게 교복 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5. 학부모가 교복을 구매할 수 없다면, 학교의 교장에 지정한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들은 또한 학군 가정 대변인 및/또는 보로 디렉터에게 연락하여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은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및
 6. 뉴욕시 규율규정에 따른 교복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제재를 받을 지의 여부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예외 요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VII. 분야

- A. 교복 요건을 채용하는 모든 학교는 예외를 요청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학생들이 교복 정책을 전적으로 준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실행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B. 학교로부터 교복 요건 통지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예외를 요청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의 학생은 교육청의 규율 규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징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징계는 규정에 정해진 바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 C. 학생들은 정학 처분을 받거나 교실 또는 학교로부터 제외되거나; 교복을 착용하기 위해 집으로 보내지거나; 더 낮은 점수를 받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의 학업관련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교복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를 학교 또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안됩니다.
- D. 학생의 부모가 정책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았다면 어떤 학생도 자발적인 교복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VIII. 교복을 구매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지원

- A. 어떤 어린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복 착용을 하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각 학교는 반드시 교복을 구매할 수 없음을 표명한 가정에서 교복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B. 각 학교는 경제적인 지원 요청을 담당할 직원을 정해야 합니다.
- C. 학교들은 학교와 협력하는 업체나 인근 상점으로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D. 학교들은 교복이 작아졌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에 교복을 기증할 수 있도록 "교복 물려주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교복 판매 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E. 교직원은 인근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하여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 기금과 리소스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 F. 가정과 지역사회 참여 담당실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개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 G. 가정의 재정 지원 요청은 신속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처리하도록 합니다.
- H. 현금이나 기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종류의 지원을 교복이 필요한 가정에 절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IX. 가정과 지역사회 참여 담당실의 지원

이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학부모, 교사 및 학생들은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장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학교장 및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질문을 학군 가정 대변인 및/또는 보로 디렉터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상기 과정을 걸쳐 해결되지 않을 질문은 가정과 지역사회 참여 담당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최되는 공개 포럼이나 학부모 코디네이터 연수에 가정과 지역사회 참여 담당실에서 발표를 해주길 원하신다면 가정과 지역사회 참여 담당실의 스페셜 서비스 디렉터 전화 212-374-2323번으로 연락하십시오.

X. 질문

본 규정서에 관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가정과 지역사회 참여 담당실	팩스:
212 -374- 2323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 Room 503 New York, NY 10007	212- 374-0076